

## 분묘개장공고(2차)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제28조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18조,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.

### 1.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

소재지	지목	분묘기수	비고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64번지, 향목리 산65번지	임야	1기	

2. 개장사유 :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

3. 공고기간

- 1차 : 2025. 6. 23. ~ 9. 26.(96일간)
- 2차 : 2025. 9. 8. ~ 9. 26.(19일간)

4. 개장방법

- 유연분묘 :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

5. 개장 후 안치장소 : 고성군 추모의 집(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47)

6. 안치기간 : 안치일로부터 5년(무연분묘)

7. 신고처 :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
고성군청 투자유치과(☎ 033-680-4481, 4482)

8. 신고방법 : 신고(연고)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(족보, 제적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등 연고자 입증서류)를 구비하여 위의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9. 공고 후 조치 :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

10. 기타사항 : 묘지신고 관련 허위, 고의성이 있거나 공고 이후 불법묘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처리 되며, 개장공고 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25년 9월 8일
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
